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88
----------	-------

발의연월일 : 2022. 9. 16.

발의자 : 박상혁 · 위성곤 · 김주영

최인호 · 전해철 · 이해식

정성호 · 김정호 · 임오경

이정문 · 장철민 · 서영석

강준현 · 조오섭 · 최강욱

홍기원 · 강병원 의원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비행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을 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없이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는 사람과 조종자 증명을 받은 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비상대응 요령, 비행 전 점검 등 비행에 대한 안전역량 미흡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시 발생하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조종자 안전

수칙 등의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음.

이에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하거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 안전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25조의 2 신설).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한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제3호의4 신설).

다. 그간 불명확했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정의를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29조제1항).

라.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9항 신설).

마.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5조제8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바. 수수료 징수 규정을 두는 경우 징수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 수수료 규정은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근거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36조제1항).

사.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한 경우에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근거를 신설(안 제166조제4항제4호의2 신설).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5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1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경우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①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제1항 중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을 “누구든지”로 한다.

제134조제24호 중 “취소”를 “취소 또는 효력정지”로 한다.

제135조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9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업무
- 6의2. 제111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
- 6의3.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제135조제8항에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제13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3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2.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신청하는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신청하는 자
7.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8.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9.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11.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리·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12.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발급 및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13.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14. 제38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받으려는 자
15.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6.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변경 지정 또  
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17. 제44조에 따라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18.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19. 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20.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21.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22.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23.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으려는 자
24.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5.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26. 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27. 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
28. 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29. 제109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자
30. 제111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
31. 제112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자
32.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려는 자
33.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4.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35. 제124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36.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자

37.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

38.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166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9조, 제135조제5항 및 제8항, 제1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위한 준비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35조제9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p>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u>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u></p> <p>② <u>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무</u></p>	<p><u>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u></p> <p><u>②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p> <p>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① <u>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라 한다)은 -----</u> ----- -----.</p> <p>② <u>누구든지 -----</u></p>
---	---

<p>인자유기구를 비행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 ----- ----- -----. -----.</p>
<p>③ ~ ⑥ (생략)</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p>	<p>제134조(청문) ----- ----- -----. -----.</p>
<p>1. ~ 23. (생략) 24. 제125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u>최소</u> 25. (생략)</p>	<p>1. ~ 23. (현행과 같음) 24. ----- ----- <u>최소 또는 효력정지</u> 25. (현행과 같음)</p>
<p>제135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 ③ (생략) ④ 삭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5. (생략)</p>	<p>제135조(권한의 위임 ·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 ----- ----- ----- ----- ----- -----. 1. ~ 5. (현행과 같음)</p>

6.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경  
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  
의 발급에 관한 업무

<신 설>

<신 설>

7. ~ 13. (생 략)

⑥ ~ ⑦ (생 략)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생 략)

6. 제109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업무

6의2. 제111조에 따른 경량항공

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심사  
업무

6의3. 제112조에 따른 경량항공

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업무

7. ~ 13.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

5.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  
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  
전성인증에 관한 업무

6.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13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제135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증명·승인·인증·등록 또는 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증명서 또는 허가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신 설>

<신 설>

<신 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5조의2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6조(수수료 등) ① -----  
-----  
-----  
-----  
----. -----  
----- 제9항-----  
-----  
-----.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하는 자

2. 제20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하는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라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작증

<신 설>

명을 신청하는 자

<신 설>

6.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신청하는 자

<신 설>

7.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신 설>

8.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신 설>

9.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신 설>

10.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자

<신 설>

11.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리·개조승인을 받으려는 자

<신 설>

12.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발급 및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

<신 설>

13.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자

<신 설>

14. 제38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받으려는 자

<신 설>

15. 제38조제4항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신 설>

16.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변경

<신 설>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17. 제44조에 따라 계기비 행증  
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을 받으  
려는 자

<신 설>

18. 제45조에 따라 항공영어구  
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을 신  
청하거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  
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신 설>

19. 제46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받으려  
는 자

<신 설>

20. 제63조제1항에 따라 운항자  
격인정을 받으려는 자

<신 설>

21. 제74조제1항에 따라 회항시  
간 연장운항의 승인을 받으려  
는 자

<신 설>

22.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직분  
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을 받으려는 자

<신 설>

23. 제90조제1항에 따라 운항증  
명을 받으려는 자

<신 설>

24. 제90조제5항에 따라 안전운  
항체계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신 설>

25.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

<u>&lt;신 설&gt;</u>	<u>직인증을 받으려는 자</u>
<u>&lt;신 설&gt;</u>	<u>26. 제103조제1항에 따라 외국 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u>
<u>&lt;신 설&gt;</u>	<u>27. 제107조에 따라 외국항공기 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 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u>
<u>&lt;신 설&gt;</u>	<u>28. 제108조제1항에 따라 경량 항공기 안전성인증을 받으려 는 자</u>
<u>&lt;신 설&gt;</u>	<u>29. 제109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자</u>
<u>&lt;신 설&gt;</u>	<u>30. 제111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한정심사를 받으려는 자</u>
<u>&lt;신 설&gt;</u>	<u>31. 제112조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 하는 자</u>
<u>&lt;신 설&gt;</u>	<u>32. 제115조제1항에 따라 경량 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으 려는 자</u>
<u>&lt;신 설&gt;</u>	<u>33.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경량 항공기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u>
<u>&lt;신 설&gt;</u>	<u>34. 제116조제4항에 따라 경량</u>

<신 설>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  
급받으려는 자

35. 제124조에 따라 초경 량비 행  
장치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

<신 설>

36. 제125조제1항에 따라 초경  
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  
으려는 자

<신 설>

37. 제125조의2에 따라 초경 량  
비행장치 안전교육을 받으려  
는 자

<신 설>

38.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  
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받  
으려는 자

② (생 략)

제166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166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25조의2제2항을 위반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  
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  
고 초경 량비행장치를 사용하  
여 조종교육을 한 자

5. (생 략) ⑤ • ⑥ (생 략)	5. (현 행과 같음) ⑤ • ⑥ (현 행과 같음)
-------------------------	---------------------------------